



[서식 3]

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문

□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이란

◦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하는 사업

□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대상자(2가지 조건 모두 충족)

- 장애종별: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기·언어·자폐성·지적장애인
- 소득수준: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
□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품목

◦ 장애유형별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42개 품목

☎ 신청가능한 품목은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보조기기 담당자 문의

□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절차



※ 방문 상담 등 안내

◦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「서비스지원 종합조사」 및 보조기기 센터의 「맞춤형 상담」, 보조기기 담당공무원의 「보조기기의 교부확인」 등 총 3회의 방문 상담 등이 이뤄질 수 있으며, 기성품 교부가 아닌 맞춤형 제작 보조기기를 교부 받는 경우에는 지역보조기기센터의 검수를 위해 추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